경영유의사항 공개안

1. 금융기관명 : 농협은행㈜

2. 제재조치일 : 2021. 4. 5.

3. 제재조치내용

제재대상	제재내용
기관	▪ 경영유의사항 : 1건

※ 조치내용 중 경영유의사항은 금융회사의 주의 또는 자율적 개선을 요구하는 행정지도적 성격의 조치임

4. 제재대상사실

가. 경영유의사항

(1) 개인사업자 대출에 대한 자금용도외 유용 사후점검절차 강화

□ 「자금용도외 유용 사후점검기준」 제5조에 의하면 기업운전자금 사후점검 대상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 대출에 대하여는 대출 취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“대출금 사용내역표”를 건별로 징구하여 자금 사용내역의 적정성 여부를 점검하여야 하고, “대출금 사용내역표”에는 계약서,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

일정 규모(건당 5억원)를 초과하는 대출에 대해서는 대출 취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업체를 방문하여 자금사용내역의 적정성 여부를 점검한 후 점검내용을 작성하고 현장방문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는데도

○ 내규「여신투자금융업무방법」 제5장 제1절 제1관 제3조에 의하면 기업운전자금대출 취급 후 3개월 이내에 “기업운전자금 사용내역표”를 여신 건별로 받도록 하고 있으나 증빙자료 첨부 및 업체 현장방문에 대한 절차를 별도로

정하지 않고 있어

실제 개인사업자에 대한 운전자금 대출의 자금용도외 유용 점검시 대출금 사용내역표를 징구하면서 증빙자료를 첨부하지 않거나, 현장에 방문하여 자금내용의 적정성도 확인하지 않는 등 자금용도 확인을 소홀히* 하고 있으므로

* 은행은 2017.3.29. 개인사업자에 대해 운전자금 용도(직원 퇴직금)로 개인사업자대출(어깨동무론) @@억원을 취급하였으나 차주로부터 대출금 사용내역표를 징구하면서 객관적 증빙자료(퇴직금 지급 영수증 등)를 확인하지 않고 차주가 작성한 확인서("일금 @@억원정 상기 금액을 직원의 퇴직금으로 지급하였음을 확인함"이라 기재)만 첨부하는 등 자금용도 확인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

개인사업자 대출에 대한 자금용도외 유용 점검시 자금 용도별로 첨부하여야 하는 증빙자료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$억원 이상 대출 취급시 #개월 내 업체 방문을 통한 점검결과를 보고하도록 내규에 반영하는 등 사후점검 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